

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02년 12월 23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2.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2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12월 23일)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기획감사실장 권순철)

가. 제안이유

- 주민 · 사회단체등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평창군의 주요시책 및 현안을 협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역경제협의회 기능 · 구성 · 임기 (안 제2조, 3조, 4조)
- 위원장직무 (안 제6조)
- 회의개최 (안 제8조)
- 의안제출 · 배부 · 청취 (안 제9조, 10조, 11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무로써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

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임.

- 본조례안은 평창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 등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한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협의회의 기능·구성·위원의 임기·위원장의 직무 및 의안의 제출·안건의 배부·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,
- 기타 법령의 형식,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위원을 평창군협의회중 최고수인 50 이내로 한 이유는?	○ 다수의 인원으로 폭넓은 의견을수립하기 위함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1부.